

의안번호	2211339
의 퇴 인	이춘석의원
회 답 일	2025. 9. 2.
추계번호	25B3682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3 신설(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·운영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,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의 전시·체험 활동을 통한 식품산업의 대중화 및 식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3 신설(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·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·운영(안 제12조의3 신설)

-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,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의 전시·체험 활동을 통한 식품산업의 대중화 및 식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, 개정안에 따라 박물관이 설립되고 운영될 시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국립식품박물관 입지나 규모,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추정하기는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식품 관련 박물관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구분		박물관명	비고
음식	차	한국차박물관, 하동야생차박물관	공립
		다도박물관, 한국차문화박물관	사립
	술	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, 전주전통술박물관	공립
		세계술박물관	사립
	커피	강릉커피박물관, 제주커피박물관마음, 왈츠와닥터만커피박물관	사립
	김치	공립 : 광주김치박물관	공립
		뮤지엄김치간	사립
	발효	국제한방발효박물관, 제천국제발효박물관	공립
	전통 음식	남도향토음식박물관	공립
		한국전통음식박물관	사립
	장	순창장류박물관	공립
		세종전통장류박물관	사립
과일	꿀	감귤박물관	공립
		숨도꿀림성	사립
재료	인삼	인삼박물관, 금산인삼관	공립